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국회·경제부·사회부
제 목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0. 08. 05. (총 6 쪽)

기 자 회 견 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M社 合併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발표내용 요약>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월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併 推進(案)」(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 지금부터 株總(8.14日) 및 주식매수청구기간(9.3日)까지
* 행사기간 : 주총 後 20日間

주가관리가 필요

- 주가 惡材 요인은 1분기 실적에 반영 또는 합병 이사회 및 公示(6.22日) 前에 시장에 Open하여 주가에 先반영 필요

※ 毛織/物産 1분기 실적이 부진하여 주가 하락 예상 (4月末 발표 예정)

	'15.1분기		'14.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毛織	12,702 億	59 億	11,535 億	152 億
物産	60,608 億	296 億	64,730 億	1,154 億

- 주가 好材 요인은 (例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건설 수주 발표 등) 합병 이사회 後 7-8월에 집중하여 주가 부양

출처: 「M社 合併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 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 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그림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단독] 이재용 '삼바 콜옵션' 직접 전화 보고받았다

0 39

최현준 기자

등록 2019-05-24 05:00

수정 2019-05-24 09:17

삼바 분식회계 핵심 '삼성에피스 콜옵션'
"에피스 상장 때, 합작사 바이오젠이 행사 계획"
2014년 이 부회장이 직접 전화로 보고받아
관련 파일들 삭제했지만 검찰이 복원
'콜옵션 평가 못해' 기존 주장과 배치
삼성 "회계 관련 내용은 없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일지

2010년 5월	삼성그룹, 바이오 등 5대 신수출 사업 부차 발표
2011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설립
2012년 2월	삼성바이오, 미 바이오젠과 합작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설립 (바이오젠, 50%-1주 콜옵션 확보)
2014년 5월	이진희 회장, 실근원석 발행
2014년 7월	삼성에피스,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피스 상장 및 콜옵션 관련 보고 (상장 계획 없었고, 콜옵션 평가 불가능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
2015년 7월	재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주총 승인
9월	통합 삼성물산 출범
2016년 4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공개하고, 삼성에피스 회계기준 변경 (지회사-연계사로 바꿔 회계상 4조원대 평가리 거둬)
11월	삼성바이오, 코스피 상장
2017년 2월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분식 의혹 제기
2018년 5월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사전 통보
11월	증권선물위,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내리고 검찰 고발
2019년 4~5월	회계사들 검찰에 '당국 조사 때 삼성과 짜고 거짓말' 실토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서버 몰래' 등 대규모 증거인멸 확인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하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떼레야 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3>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